

##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

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 | 14일    |
| 신청인  | 상 호<br>(법인명)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| 성 명<br>(대표자명)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    |
| 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| 팩스번호                | 전자우편주소 |
| 컨테이너 | 형식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비 고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「선박안전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|      |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없음 | 수수료<br>3,000원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|

### 유의사항

- ☐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  - 2.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
  - 3.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
 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
  - 5. 「선박안전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 - 6. 정당한 사유 없이 「선박안전법」 제75조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

### 처리절차

